

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9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비대면(非對面)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 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-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 마련 (안 제4조제2항)
-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사항을 정함(안 제7조의2)

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,
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의 2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 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

- ②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

-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

제10조제1항중 “공인”을 “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무과 ☎ 940-4102
입 안 자	총무과장	홍 덕 기
	총무담당	서 천 하
	담 당 자	윤 덕 규

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

공 인 명							
종 류		□ 청인		□ 직인		□ 특수공인	
등록 · 재등록	전자이미지공인 인 영	등록일(재등록일) 최초 사용일	년 월 일 년 월 일				
	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	등록(재등록)사유					
		관 리 부 서					
		비 고					
폐 기	전자이미지공인 인 영	등록일(재등록일) 폐 기 일	년 월 일 년 월 일				
		폐 기 사 유					
		폐 기 자	소 속 : 직 급 : 성 명 :				
		비 고					

비 고 :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, 그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,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특수공인) ① (생략) (신 설)	제4조(특수공인)① 생략 ②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,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(신 설)	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하여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 야 한다 ③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 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
제10조(공고)①공인----- -----	제10조(공고)①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) -----

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비대면(非對面)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있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전자이미지공인의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)
-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사항을 정함(안 제7조의2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사무관리규정

제36조 (특수관인)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,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0조 (공고) 관인(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)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 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

제57조의2 (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)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
③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- 지난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,129호에 의거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비대면(非對面)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